
연합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합회 'SNS기자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언론문화창달과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회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신문방송등 매스컴에 관한 학술연구와 자료수집
2. 회지 및 연구지 발간
3. 공익사업
4.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연합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합회 취지에 찬동하는 지역 저명인사로서 회원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본 연합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원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각급기관의 결의 사항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자격상실)

본 연합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인의 탈퇴원이 있을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회원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

제 3장 회의

제8조(회의종류)

본 연합회는 총회에 특별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본 연합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 및 개정
2. 회원장, 부회원장 및 감사 선출
3. 회원장 및 고문 추대
4. 결산승인
5.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연합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원장 1인
2. 부 회원장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5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장은 회원들을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원장은 회원장을 보좌하며 회원장 유고시에는 회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원장은 총무, 재정, 섭외, 사업 기타 각종 업무별로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치인은 회원장이 될 수 없다.
5. 본 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연합회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연합회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장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선출)

1. 본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1주일 이내에 보선한다.

제19조(임원의 대우)

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및 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고문, 자문회원)

명예회원과 약간명의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하고 자문회원 약간명은 회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사무국

제21조(사무국)

본 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2조(직원)

1. 사무국에 국장, 회원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4.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 연합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연합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비)

1. 본 연합회 회비의 액수는 연합회에서 결정한다.
 2. 본 연합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반환을 하지 않는다.
 3. 당 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승인 받기 전이라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26조(포상)

본 연합회의 취지와 목적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에 대하여도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규율

제27조(징계사항)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연합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 연합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1.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
2. 연합회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제28조(징계구분)

본연합회의 징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제명

부칙

제1조(시행세칙)

본 규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총회 대행)

창립 총회는 정관상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효력)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